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허 남 순\*\*

### [요 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 중 학대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학대를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하지 않는 사람간의 차이와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자는 신고의무자 중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유의 표집이었고 신고지와 비신고지간의 차이와 신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응답자 477명중 학대당한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116명만을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하였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35.3% 만 아동학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집단과 신고하지 않은 집단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지식 그리고 아동학대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 등이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신고자들이 아동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고 아동학대 에 대한 교육이나 지식을 접한 경험이 더 많았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을 모두 투입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직업, 학대 교육을 받은 경험 정도, 발견한 아동의 학대의 심각성 정도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신고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발견, 신고행동

\*이 논문은 2000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00-13)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서론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적응에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Gil, 1979). 그러나 이와 같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거의 없는 실태였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고,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을 통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동의 특성상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의 신속한 신고와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에는 법적, 제도적 미비와 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미약하여 지난 3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약 590여건만이 신고되었다.<sup>1)</sup> 그러나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고 아동학대 신고선화가 설치되면서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01년 일년 동안에 2,606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숫자도 김재엽(1998)의 연구에서 보고된 지난 한해 동안에 한국사정의 사녀 100명중 6명이 부모에게 심각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임을 알 수 있다.<sup>2)</sup> 특히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전체 신고건 수 2,606건 중 26.4%인 686건에 그쳤다(보건복지부, 2002). 이는 미국의 경우 연간 200만 건의 아동학대 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52%(NASW, 1995) 인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아동학대란 한 특정사회가 아동에 대하여 어떤 양육방법을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학대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며,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도 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아동학대방지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감시와 신고라고 하는 사회성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없으면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히 법에 규정된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감시하며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발견과 개입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돕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더 심각한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길게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하다. 이를 위해 신고의무자들의 신고행

1)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의 신고율이 저조하여 한국 이웃사랑회의 전국 16개 아동학대상담센터를 통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 간 접수된 것은 597건밖에 되지 않았다.

2) 이 비율에 의하여 김재엽은 지난 한해 동안 83만 명의 한국 아동들이 부모에 의해 심각하게 구타당했다고 추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재엽, 1998. 한국가성의미성년 자녀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6호).

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는 신고의무자들의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나와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학대에 대한 개념규정이나 인식에 대한 연구(고성혜, 1992; 안동현, 1998; 노혜련, 1992; 윤혜미, 2000)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인식에 대한 석사학위논문(이시연, 2000; 박은영, 2001) 몇 편이 있을 뿐이다. 아직 신고 의무자들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하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피해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신고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행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신고자들의 개인적인 배경, 학대관련 교육 뿐 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신고 지식, 학대의 심각성 등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는 신고자들의 신고 행동을 분석할 때 다민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들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며, 신고를 하는 사람들과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한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개입과 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본 추출방법에서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의 제한성을 갖는다.

## 2. 선행연구

미국의 경우 1980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연루된 아동이 2백 7십만 명이였다(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93). 아동학대 신고의 52%가 신고 의무자에 의한 것이었으며, 28.8%가 친구나 친척, 21%가 익명의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다.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의 증가에 대해 미국에서는 두 가지의 논쟁이 있다. 하나는 아동학대 및 방임 현상이 실제로 증가한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대를 신고하는 사람들의 자발성이 더 커진 결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NIS-2의 보고서는 학대를 발견하는 전문가의 능력의 향상과 자발성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신고의 증가를 더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그러나 NIS-2(the second National incid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보고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아직도 사람들이 발견한 학대나 방임 중 40%만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학대 사실을 신고했다는 신고의무자가 26%로서(2002. 보건복지부) 미국에 비하여 신고율이 더욱 저조하였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는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신고제도를 몰라서,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업무가 많아서 등 다양하였다(이시연, 2000.).

그러나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여 신고의무자들의 직업적 배경(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등) 아동학대에 대한 훈련 정도(King, et al., 1998),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Tilden et al., 1994),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King, Reece, Bendel & Patel, 1998), 학대의 심각도(Escobar, 1995; Kalichman's, 1993) 등이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신고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신고자의 인구 사회학적인 변인이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하여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Ashtor(1999)은 신고자의 연령, 성별, 자녀유무가 신고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Badger(1989) Howe(Howe, et al., 1988) Wilson(1992)은 여자가 남자 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 시 더 많이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반면 Zellman과 Bell(1990)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연령도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젊은 의사로서 의과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 되는 의사들이, 아동학대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 교육받은 의사들보다 학대를 더 많이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dger, 1989; Warner and Hansen, 1994; Zellman and Bell, 1990).

전문직업과 신고 행동간에 관계를 조사한 연구로 Noyes(1987)는 New York 주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56%가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Wilson(1992)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70%가 그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고도 사례를 신고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Zellman 과 Bell(1990)이 의사, 심리학자, 교직원 등 1196명의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40%가 석어도 한번은 아동학대나 방임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장들이 다른 교직원들보다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경향이 적었으며 학교의 상담교사나 사회사업가가 가장 신고율이 낮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의무자들간에도 직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ox & Dingwall, 1985; Kaiser & Berry, 1988), Kaiser와 Berry(1988)는 교사나 의사 등이 경찰이나 소방사들 보다 신고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Muehleman과 Kimmons(1981)는 아동학대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를 신고 할 것인가를 질문하였을 때, 조사대상자인 상담원의 50%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2001년도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의하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6%이며, 그중 관련 공무원의 신고가 19%이었고, 교사들의 신고가 5%, 의료인의 신고가 2.5%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 등 공무원의 신고율이 가장 많았고, 반면 아동과의 접촉이 많은 교사나 의료인들의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2). 교사들의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어린이집 교사들 284명을 대상으로 한 김지윤(2000)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56명의 교사 중 3명만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경찰이나 아동학대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연(2000)이 개정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있는 신고의무자인 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원, 의료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육교사 등 16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53명이며, 그중 5명만이 신고를 한 것

으로 응답하여 직업과 관계없이 법으로 규정된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 2) 신고자의 학대관련 태도 및 지식과 교육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신고의무자들 자신이 아동기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Howe(Howe, et al, 1988), Nuttall(Nuttall and Jackson, 1994), Warner(Warner and Hansen, 1993)는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일수록 아동학대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Wilson(1992)의 연구는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은 아동 학대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들(Owens & Strauss, 1975; Strauss, 2000; 윤혜미, 2000)은 동기에 폭력을 경험한 성인이 체벌이나 학대에 대하여 허용적이며, 이와 같은 태도가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역시 아동학대신고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보고되는데, 체벌은 아동을 훈육하는데 필요한 것(Levin,1983; Morris et al., 1985; Warner and Hansen, 1993; Tite, 1994)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의 태도 중 부모들의 사적인 일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Swoboda, 1978),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대한 물신이나 부정적인 경험 여부가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oyes, 1987; Romano, Casey, and Daro, 1990; Wilson, 1992; Zellman and Well, 1990). Zellman(1990a)는 신고의무자인 전문가 집단이 신고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대의 심각성, 학대의 유형, 법적으로 및 학대신고를 통하여 학대가정이 받게 될 혜택이라고 하였다.

아동학대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즉 아동학대의 증상, 아동학대 방지법 또는 신고 관련 지식이나 교육정도가 신고행동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았을수록 신고를 하는 경향이 많았다(Levin, 1983; King, et al., 1998). Zellman(1990b)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증거의 불충분, 신고할 만한 정도가 아니다, 또는 아동학대신고 기관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하였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Levin(1983)은 교사들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학대와 방임을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이 없거나 어니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서 등의 이유로 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Van Bergeijk, 2000, King, et al., 1998) 아동학대신고가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많다고 하며 이는 신고의무자들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지,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식을 정기적으로 직장에서 전달받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학대신고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VanBergeijk(2000)은 특히 직장에서 계시관이나 교실 등에 아동학대신고센터 전화번호나 아동학대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 더 많은 신고 의무자

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실시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였어도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서 이시연(1999)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고의무자들의 32.3%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어도 실제로 신고한 사람은 이들 중 9.6%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은령, 1998; 김지윤, 2000; 이지숙, 1997)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신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고도 신고하는 경우는 아주 적었다. 김은영(1998)은 조사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9명의 교사 중 1명, 김지윤(2000)의 조사에서는 학대를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 중 3명만 경찰이나 아동학대에 방선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시연(1999)의 조사에 의하면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등의 신고의무자들 중 신고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69.5%밖에 되지 않으며 30%는 신고제도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제도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이 세미나, 훈련, 매스컴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고 하여 교육이나 세미나 등이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제도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이시연, 1999; 김지연, 1999) '신고 후 부가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므로' 또는 '신고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학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등으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하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라고 하겠다.

### 3) 피 학대 아동 요인

피 학대 아동의 빈인도 아동학대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학대의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rds and Harrel, 1993; O'Toole, O'Toole, Webster, and Lucal, 1994; Warner and Hansen, 1994; Zellman and Bell, 1990). 학대의 유형 역시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성적 학대의 경우, 대부분이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Ards and Harrel, 1993; O'Toole, O'Toole, Webster, and Lucal, 1994; Warner and Hansen, 1994; Zellman and Bell, 1990). 교육적인 방임(Ards and Harrel, 1993)의 경우 가장 신고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나 성, 경제적인 상태 등은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으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만 일관적으로 학대 가정의 경제적인 상태가 신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Celeman, 1989; Warner, and Hansen, 1993; Turbette and O'Toole, 1983).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인 교사,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의료인, 상담원, 등의 전문가 집단 중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초등학교 교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유의 표집으로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도청 소재지 1 곳, 농어촌 중심의 중소도시 1 곳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도시 내에서는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학교와 사회복지관 및 그 지역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병원은 서울에서 2개, 지방에서 각각 1개씩 4곳의 종합병원을 선정하였다. 병원 역시 서울은 다른 종합 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종합 병원을 선택하였으며, 다른 두 도시는 종합병원 2개 중에 가장 오래 된 종합병원을 선택하였고, 농어촌에 인접한 중소도시는 종합 병원이 한 곳 밖에 없어서 그곳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초등학교는 3개의 시에서 각각 2개씩, 6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여섯 곳의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과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종합병원 세 곳을 선정하여 아동학대를 접할 수 있는 소아과나 응급실 외과, 방사선과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선정된 각 기관의 책임자나 병원의 사회복지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설문지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뒤 책임자나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우송하였다. 각 기관의 책임자나 담당자는 설문지를 관련 직원들에게 부여하여 개개인이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한 설문지를 책임자가 수거하여 우편으로 연구자에게 다시 우송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1년 5월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배분된 설문지 595부중 477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지난 일년 동안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설문지” 116부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설문지는 문헌연구와 함께 신고의무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교사, 간호사, 의사 각각 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문항이나 이해가 안되는 용어들을 다시 정리하였다.

## 2) 변수 및 조사도구

###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따라 1개의 종속변수를 갖는다. 종속변수는 신고 행동의 결정으로 “신고”와 “비 신고”의 두 개 하위 범주를 갖는다. 이때 신고는 아동보호기관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관련 상담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즉 지난 일년 동안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까? 를 먼저 질문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행위를 신고 비신고로 분류하였다.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한국상황에서도 이 변수들이 유의미한 가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신고자 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기 내 학대당한 경험, 아동학대 교육 및 훈련정도,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 근무경력, 결혼상태, 자녀유무 와 직업을 포함한다. 성, 결혼상태, 자녀유무, 직업은 분석단계에서 더미 변수로 구성했는데 여자는 0, 남자는 1로, 결혼은 미혼은 0, 기혼은 1, 자녀는 없으면 0 있으면 1로 하였다. 직업은 교사를 0으로 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는 각각 1로 더미 변수화 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무엇을 학대로 인식하는 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장 화정(1998)의 아동학대 행위 척도에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의 행위에 대한 변수를 각각 5문항씩 20문항을 선정하 뒤 본 연구자가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때린다, 아이와 음란 비디오를 함께 본다, 아이의 질병을 치료 해 주지 않는다 등으로서 응답 범주는 “절대 학대가 아니다”, “학대가 아니다”, “그저 그렇다”, “학대이다” “심각한 학대이다” 의 5점 척도로서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였다. 이들 문항의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척도의  $\alpha = .91$ 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변수는 5개로서 직장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실시되는 아동학대 교육이나 훈련 방법들을 제시하고 “예”와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직장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지침서를 배포한다”, “계시관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번호나 지침서가 붙어있었다” 등이 이에 관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이들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는 5점을 주었으며, “아니오” 라고 답한 경우는 0점을 주어 모두 다섯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은 아동학대나 신고관련 지식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학대받는 아동들의 증상을 알고 있습니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등이며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



로 답하도록 하였고, “예”로 답한 경우는 1점을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는 0점을 주도록 하였다. 5개의 문항에 대한 답을 합산한 점수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식 점수이다.

학대받는 아동의 변수는 가장 최근에 발견한 아동의 성, 연령, 학대의 심각도 정도이다.

심각도는 1문항으로서 “학대의 정도는 얼마나 심각하게 보여졌습니까?”로 묻고 “심각하지 않았다”에서 “아주 심각하였다” 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가설 및 연구질문

#### (1) 가설

가설 1. 신고자와 비신고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신고자와 비신고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신고자와 비신고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 질문

아동학대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첫째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지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학대 신고와 학대정도, 확산 정도 등의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한다.

넷째, 가설 검증을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다.

다섯째,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자료의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모델들에 가능성 통계치를 통한 모형의 적합성 평가(goodness-of-fit test)를 시행한다. 샘플 사이즈가 적고 탐색적인 성격이 강한 연구이므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시에 유의미한 수준은 1.0으로 한다.

## 4.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변인에 대한 분석

#### (1)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116명중 남자가 25%(29명), 여자가 75%(87명)로 여자응답자가 많았다.〈표 1〉 여자 응답자가 많은 것은 교사나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등 아동복지법에 신고의무자로 명시된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가 32%(39명), 간호사가 12%(14명), 사회복지사가 45%(53명), 그리고 의사가 8%(10명)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22세부터 62세까지로서 평균 32.8세 이었고 평균 근무경력은 7.67년이었다. 응답자들의 결혼 상태는 기혼이 58.6%, 미혼이 41.4%이며 자녀가 있는 사람이 50.7%이었고 평균 자녀수는 1.5명이었다. 종교는 개신교가 43.5%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무교(29.6%)와 천주교(17.4%)순이며, 학력은 대학졸업이 80%, 대학원 졸업이 20%이었다. 근무지역은 서울이 57.7%이었고 중소도시가 40.9%이었다. 응답자들 중 아동기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사람이 37.1%나 되었다.

〈표 1〉 일반적 특성(N=116명)

변 수	구 분	빈도(%)	변 수	구 분	빈도(%)
성 별	남	29(25.0)	자녀유무	있다	53(46.1)
	여	87(75.0)		없다	62(53.9)
연 령	22세-62세	32.84세(평균)	근무경력	1년-39년	8.39년(평균)
학 령	대학 졸	92(80)	근무지역	서울	67(57.7)
	대학원 졸	23(20)		중소도시	49(40.9)
종 교	개신교	50(43.5)	직 업	교사	39(33.6)
	천주교	20(17.4)		간호사	14(12.1)
	불교	5(4.3)		사회복지사	53(45.7)
	무교	34(29.6)		의사	10(8.6)
	기타	6(5.2)			
결혼상태	기혼	68(58.6)	학대당한 경험	있다	42(37.1)
		48(41.4)		없다	73(62.9)

#### (2) 아동학대 인식, 교육 및 신고지식

응답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평균 86.79 도시 보편적으로 응답자들의 학내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표준편차가 8.41로서 응답자간에 학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직장을 통하여 강의나, 알림장, 직장의 계사관, 직원회의, 구두전달 등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정도가 평균 11.38이 있었지만 표준편차 9.59로서 응답자간에 교육정도에 차이가 많았다. 아동학대 관련 신고지식은 평균 3.65였지만 표준편차가 1.58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 및 신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표 2>

<표 2> 아동학대 인식 및 교육과 지식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아동학대인식	86.79	8.41	100	60
학대교육정도	11.38	9.59	25	0
신고지식	3.65	1.58	5	0

### (3) 아동학대 발견 및 조치

응답자들이 지난 일년동안 발견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들의 연령은 1세부터 17세까지 다양하였다 <표 3>. 아동들은 남자가 69.8% 여자가 30.2%였으며 학대의 심각 정도는 4점 만점에서 2.60이고 표준 편차가 .88이었다.

<표 3> 피 학대 아동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아동의 연령	1-7	25명(29.9%)
	8-13	70명(65.1%)
	16-17	5명(4.7%)
아동의 성	남	81명(69.8%)
	여	35명(30.2%)
학대의 심각도		2.60(평균) .88(표준편차)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사람 중 실제로 아동학대를 신고한 응답자는 35.3%(41명) 있고 64.7%의 응답자는 학대를 당하고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38.8%가 자신이 만난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매우 확신하거나(6.9%) 확신하고(31.9%) 있었지만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와 관계없이 많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나 방임을 방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표 4〉 학대 확신과 신고여부

학대 확신 여부	신고여부		
	빈 도(%)		
	비 신고	신 고	합 계
전혀 확신이 없었다	2(1.7)	1(.9)	3(2.5)
확신이 약간 없었다	28(24.1)	4(3.4)	32(27.6)
확신이 있었다	37(31.9)	16(13.8)	53(45.7)
매우 확신했다	8(6.9)	20(17.2)	28(24.1)
합 계	75(64.7)	41(35.3%)	116(100)

응답자들이 발견한 아동들의 학대 정도는 아주 심각하거나(19.0%), 심각하였다(30.2%)고 응답한 사람들이 49.2%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24.2%가 아동의 학대당한 정도가 아주 심각하거나(5.2%) 심각하다고(19%) 생각하였음에도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학대 심각도와 신고여부

학대정도	신고여부		
	빈 도(%)		
	비 신고	신 고	합 계
심각하지 않았다	8(6.9)	1(2.4)	9(7.8)
약간 심각하였다	39(33.6)	11(9.5)	50(43.1)
심각하였다	22(19.0)	13(11.2)	35(30.2)
아주 심각하였다	6(5.2)	6(13.8)	22(19.0)
합 계	75(64.7)	41(35.3)	116(100)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우선순위 별로 세 가지만 표시하라고 했을 때, 신고할 정도로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45.8%)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신고해야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36.1%), 세 번째가 학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몰라서(25.0%), 네 번째가 신고 후 부가될 책임조사과정이 부담스러워서(18.1%), 다섯 번째가 아동의 가족들로부터 비난받을까봐(15.3%)의 <표 6> 순으로 Zellman(1990)이나 Levin(1983) 등의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들의 복지나 안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가에 대한 인식부족과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의나 신고후의 조치 및 학대 증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표 6〉 신고하지 않는 이유

변 수	빈 도(%)	
	그렇다	아니다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33(45.8)	39(54.2)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26(36.1)	46(63.9)
학대인지 확실하게 몰라서	18(25.0)	54(75.0)
관심 가질 여유가 없으므로	15(20.8)	57(79.2)
책임 조사과정이 부담스러워서	13(18.1)	59(81.9)
아동의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봐	11(15.3)	61(84.7)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9(12.5)	63(87.5)
잘못 신고한 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봐	7(9.7)	65(90.3)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6(8.3)	66(91.7)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6(8.3)	66(91.7)
기타	13(18.1)	59(81.9)

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동의 부모 그리고 아동과 상담하였다가 가장 많았고(30.1%), 두 번째가 아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오고 있다(15.1%), 세 번째가 아무런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19.2%)였다.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앞으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를 질문하자,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자는 40.8%뿐이고, 아직도 많은 응답자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겠다(19.7%), 아동과 상담하겠다(11.3%) 등의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7〉

〈표 7〉 아동학대 발견 및 조치

변 수	구 분	빈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아동의 부모 그리고 아동과 상담	22(30.1)
	아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14(19.2)
	아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오고 있음	11(15.1)
	아동학대여부를 아동에게 질문	10(13.7)
	아동학대여부를 부모에게 질문	9(12.3)
	아동과 부모를 전문기에게 의뢰	7(9.6)
학대의심 아동 발견 시 대처 방법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겠음	29(40.8)
	부모에게 전화를 하겠음	14(19.7)
	아동과 상담하겠음	8(11.3)
	부모를 오도록 하겠음	8(11.3)
	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하겠음	7(9.9)
	경찰에 신고하겠음	4(5.6)
	기타	1(1.4)

응답자들에게 학대신고가 아동이나 가해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음

때 아동학대가 줄어들거나 중지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49.5%로서 가장 많았으나 아동은 영원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거나(15.9%) 아동학대가 은밀하게 더 심해질 것이라(15.9%)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응답자도 31.8%나 되었다(표 8). 신고의무자들이 자신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함으로써 아동이 학대를 더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동이 부모와 영원히 이별하게 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학대당하는 아동을 발견한다고 하여도 학대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를 용이하게 하려면 신고가 아동이나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8〉 신고의 영향

신고가 아동에게 주는 영향	빈도(%)
아동학대가 줄어들거나 중지될 것임	53(49.5)
아동학대가 은밀하게 더 심해질 것임	17(15.9)
아동이 보호시설로 보내질 것임	18(16.8)
아동은 영원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	17(15.9)
신고해도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임	2(1.9)

## 2) 가설 검증

신고자집단과 비신고자 집단간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정도, 아동학대 관련 지식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표 9).

가설 1. 신고자집단과 비신고자 집단간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두 집단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032$ )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 본 가설은 수용되었다. 즉 신고자들이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 아동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가설 2. 신고자 집단과 비신고자 집단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지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두 집단은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00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가설은 수용되었다. 즉 신고자들이 비신고자들에 비하여 학대의 증상이나, 신고기관, 법적인 신고 의무 등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신고자집단과 비신고자 집단간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신고자 집단과 비신고자 집단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연수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p=.001$ ) 차이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 본 가설은 수용되었다. 신고자들이 비신고자들보다 직장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이나 훈련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신고여부에 따른 변인별 평균차이

변 수	구 분	평균(표준편차)	사례 수	t	P
아동학대 인식	비신고자	85.58(8.59)	75	-2.119	.032
	신고자	89.12(7.74)	40		
신고지식	비신고자	3.14(1.62)	74	-5.069	.000
	신고자	4.56(.98)	40		
학대교육·연수	비신고자	9.26(9.25)	75	-3.401	.001
	신고자	15.37(9.15)	40		

### 3)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표 10〉은 응답자가 피 학대 아동을 신고기관이나 경찰 등에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종속 변수의 효과를 측정한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이다. 종속변수를 신고와 비신고로 하고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인 성, 연령, 자녀유무, 직업, 신고자의 아동학대 관련 변수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기 때 학대당한 경험, 아동학대 교육 및 훈련정도, 학대에 대한 지식, 피학대 아동 변수로 학대의 심각성 등의 변수를 포함한 모델의( $\text{Chi-Square}=56.017, p=.000$ ) 적합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을 기초로 결과를 보면 직업, 학대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고, 학대에 대한 교육 정도( $p=.86$ )는 통계적으로 marginal 한 수준에서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들은 학대아동을 신고할 확률의 odds가 교사들에 비하여 28.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은 학대아동을 신고할 확률의 odds가 교사들에 비하여 9.0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은 의무신고자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확률은 교육정도가 1단위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은 의무신고자들에 비하여 1.06배 높았다. 또한 아동의 학대당한 정도가 1단위 올라갈수록 학대를 신고할 확률의 odd는 1.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신고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모 델		
	B(S.E)	P	Exp(B)
성 별	.298(.727)	.681	1.348
연 령	.059(.064)	.361	1.061
자녀유무	.801(.692)	.247	2.228
최종학력	1.069(.706)	.130	2.911
간호사 <sup>1)</sup>	1.155(1.204)	.337	3.175
의사	3.294(1.373)	.016	26.945
사회복지	2.202(1.071)	.040	9.044
학대경험	.261(.403)	.517	1.298
신고지식	.450(.285)	.114	1.569
학대교육	.054(.031)	.083	1.055
학대의 심각성	.641(.279)	.021	1.898

상수항: -12.240(4.138)

-2 log likelihood: 92.020

Model Chi-square: 56.017 p=.000

1) 직업의 기준 더미 변수는 교사임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이 학대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하지 않는 사람간의 차이와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자는 신고의무자 중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고자와 비신고자간의 차이와 신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 중 학대당한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116명만을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하였다.

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이 발견한 피학대 아동의 연령은 1세부터 17세까지 다양하였다. 학대의 정도는 심각하거나 아주 심각한 경우가 49%로서 응답자들이 발견한 아동들의 반수가 심각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69.8%가 자신들이 발견한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 중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동들을 실제로 신고한 응답자는 35.3%밖에 되지 않았고 64.7%의 응답자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대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가 38.8%나 되고 학대의 정도가 심



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24.2%로서 신고의무자들의 무관심이나 지식 부족으로 많은 아동들이 학대 상황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없음으로 현재 제도상으로는 신고의무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만 의지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신고자와 비신고자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지식, 아동학대 관련 교육경험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가설은 모두 수용되었다. 두 집단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지식 그리고 아동학대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 등이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신고자들이 비신고자들에 비하여 아동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지식이 더 많았고 아동학대 에 대한 교육이나 지식을 접한 경험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vin(1983), Warner와 Hansen(1993) 및 King(1998) 등이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지식이 신고 행동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모든 변인을 부여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직업, 학대관련 교육 경험 과 발견한 아동의 학대의 심각성 정도만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에서 신고자와 비신고자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신고 지식은 다른 요인들을 부여했을 때 신고행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서 실시된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김은영(1998)은 아동학대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신고를 한 사람은 피학대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 59명중 1명 뿐 이었다고 하였고 김지운은(2000)은 신고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피학대 아동을 발견한 56명의 교사 중 3명만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은영(2001)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허용정도가 교사들이 학대당하는 아동을 처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로 보아, 신고 지식이나 아동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만으로는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고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직업으로서 교사가 의사나 사회복지사 보다 학대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의사나 사회복지사들에 비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율이 적은 것은 의사나 사회복지사보다 심각한 학대를 접하는 경우가 적은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교사들은 특히 아동을 가장 많이 접하며 학대당하는 아동을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직업인 만큼 교사들이 학대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도록 함으로서 더 심각한 아동학대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의미한 요인으로는 학대관련 교육 경험으로서 직장에서 직원회이나 특강, 게시판에 아동 보호기관 신고 전화번호 부착 등의 홍보 등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한 신고지식 보다는 직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지속적인 전달이 신고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직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은 직장의 책임자들이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직원들에게 알리며 직원들의 아동학대 신고를 격려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서 신고자들의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된다. VanBergeijk(2000)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회수와 아동학대에 대한 지침서를 받은 회수가 아동학대 신고 행동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VanBergeijk(2000)는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센터 전화번호나 희대관련 홍보가 비밀스런 장소가 아닌 교실마다 그리고 학교 여기저기에 붙여져 있을 때 신고를 더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조사에서 신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또 다른 변수는 학대를 받은 아동의 학대의 심각도 정도로서 학대를 받은 아동의 학대정도가 심각할 때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아동학대를 신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VanBergeijk, 2000; Levin, 1983, Zellman, 1990). 그러나 이와 같은 신고 태도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데 장애가 된다. 특히 심각도를 확인하기 힘든 정서장애나 방임 등은 그대로 방치되기 쉽다. 학대의 정도뿐 아니라 학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아동들의 정서발달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심각한 학대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학대도 신고되어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신고의무자들이 종사하는 직장에서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지침서 배포,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게시판에 부착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사원들에게 아동학대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한번의 교육이나 한가지 방법만으로는 신고의무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가울 바꾸기 어려우므로 직장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훈련, 홍보 등이 중요하다. 직장을 통한 교육은 아동학대신고를 했을 때 따를 수 있는 복잡함이나 아동의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난, 또는 아동에게 더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등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지적인 분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를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 의무자들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직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신고의무자들에게 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단순히 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신고지식에 대한 것 뿐 만 아니라 신고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신고에 따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해결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신고의무자들이 근무하는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들이 직원들의 아동학대 신고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상의를 하거나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 직원들은 기관의 책임자가 아동학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신고를 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며 기관장 간담회나 교육 세기나 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나 아동학대 예방센터는 병원, 학교, 유아원, 사회복지 시설 등 신고의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서, 홍보물, 강의 등을 개발하여 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 필요성을 자주 상기시킬 수 있다.

다섯째, 신고의무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목 중에 아동학대 관련 과목을 첨가하거나 다른 교과목 중에서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교사는 사회복지사나 의사가 발견하기 힘든 방임이나 정서 학대 아동들을 교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학대를 신고하는 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학생시절에 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아동학대 신고를 자극하고 신고 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하겠지만 학대를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이나 보람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아동학대 신고 후 부가될 수 있는 책임을 최대한 줄여주고 신고된 아동에 대한 조치나 사후 관리 등을 신고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보람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 1999. "아동학대 신고체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1998a.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김재엽, 1998b. "한국 가정의 기성년 자녀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6호, 한국아동복지학회.
- 노혜련, 1992. "아동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분: 문화적 배경의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19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박은영, 2001.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대처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동현 외, 1998. "한국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신경정신의학』, 37(4), pp. 561-673.
- 윤혜미, 2000. "성인의 차별용인도와 아동의 차별경험 및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 『한국아동복지학』 제10호, 한국아동복지학회.
- 이시연, 2000.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ds, S. and Harrell, A., 1993. "Reporting of child maltreatment: A secondary analysis of the National Incidence Surveys," *Child Abuse & Neglect*, 17, pp. 337-344.
- Ashton, V., 1999. "Worker judgments of seriousness about and reporting of suspected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3(6), pp. 539-548.
- Badger, I. W., 1989. "Reporting of child abus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physician, practice and community," *Southern Medical Journal*, 82(3), pp. 281-286.
- Coleman, A.A., 1989. "A descriptive study of child abuse reports from urban medical and nonmedical reporting sour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at Baltimore.
- Fox, S., & Dingwall, R., 1985. "An exploratory study of variations in social workers' and health visitors' definitions of child mistreatment,"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er*, 15, pp. 467-477.
- Howe, A. C., Herzberger, S., and Tennen, H., 1988. "The influence of personal history of abuse and gender on clinicians judgement of child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3(2), pp. 105-119.
- Kaiser, K., and Berry, S., 1988. "Child abuse: Definition, reporting, stereotypes; A survey of Butte county California resident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31, pp. 59-74.
- Kelchman, S. C., 1993. "Mandated reporting of suspected child abuse: Ethics, law, and policy," *Washington, D. C.: APA*.
- King, G., Reece, R., Bendel, R., & Patel, V., 1998.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training, and attitudes on the lifetime reporting practices of mandated reporters," *Child Maltreatment*, 30, pp. 276-283.
- Levin, P. G., 1983. "Teachers' reporting of child abuse," *Child Welfare*, 62(1), pp. 14-19.

- Muehleman, T., and Kimmons, C., 1981. "Psychologists' views on child abuse reporting, confidentiality, life, and the law : An exploratory study," *Professional Psychology*, 12(5), pp. 631-638.
- Noyes., 1987. "School professionals'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child abuse and neglect : Impact on repor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 Nuttall, R., and Jackson, H., 1994. "Personal history of childhood abuse among clinicians," *Child Abuse & Neglect*, 18(5), pp. 455-472.
- O'Toole, A.W., O'Toole, R., Webster, S., Lucal, B., 1994. "Nurses' responses to child abuse : A factorial surve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2), pp. 194-206.
- Romano, N., Casey, K., and Daro, D., 1990. "School and child abuse : A national survey of principals' attitudes, beliefs, and practices," *Published Report. Chicago : National Committee to Prevent Child Abuse.*
- Swoboda, J. S., Elwork, A., Dennis Sales, B., and Levine, D., 1978. "Knowledge of and compliance with privileged communication and child abuse reporting laws," *Professional Psychology, August*, pp. 446-457.
- Tite, R., 1994. "Muddling through : The procedural marginalization of child abuse," *Interchange*, 25(1), pp. 87-108.
- VanBergeijk, E.O., 2000. Designated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New York city schoo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Warner, J. E., and Hansen, D. J., 1994. "The identification and reporting of physical abuse by physician : A review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Child Abuse & Neglect*, 18, pp. 11-25.
- Wilson, L. S., 1992. "The reporting decisions and ethical reasoning of professionals in reporting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 Zellman, 1990a. Report decision-making patterns among mandated child abuse reporting, *Child Abuse and Neglect*, 14(3) 325-336.
- Zellman, 1990b. Child Abuse Reporting and failure to report among mandated report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3-22.
- Zellman, G. L. and Bell R. M., 1990. "The role of professional background, case characteristics, and protective agency response in mandated child abuse reporting," *Santa Monica, CA : Rand.*

##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porting Behavior of Mandated Reporter

Huh, Nam-Soo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This is the study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andated reporters who reported child abuse and who did not report and to know which factors affect the reporting behavior. The researcher sent questioners to 595 doctors, teachers, nurses and social workers in 3 different cities as a sample. 477 people responded to questioner and only 116 people who said that they have found out abused child during the last year were used for analysis of this research. Among 116 people, only 35.4% reported child abus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groups that reported child abuse and groups that did not report, in attitude about Abuse, the experience of child abuse training and knowledge about abuse. However,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reporting behavior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occupation, experience of child abuse training and severity of abuse.

Key words: mandated reporters,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behavior,  
social workers, abuse report, attitude about child abuse

[접수일 2003.3.4 게재확정일 2003.3.28]